

의안번호	2210763
의 퇴 인	이해민의원
회 답 일	2025. 8. 13.
추계번호	25B320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8조의7(이행강제금)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가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또는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협조를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다만, 매출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3	안 제7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3항) <u><삭제> 11의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u> <u><삭제> 12.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u>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8조의7(이행강제금)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안 제76조(과태료)	

2. 상세 사유

□ 침해사고 관련자료 미제출자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신설 및 과태료 폐지 (안 제48조의7 및 안 제76조)

○ 현행법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발생한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민·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침해사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와 중대한 침해사고 조사를 위한 관계 공무원 등의 사업장 출입·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기피한 자(이하 “침해사고 관련자료 미제출자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침해사고 관련자료 미제출자등에게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협조를 다시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침해사고 관련자료 미제출자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을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매출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대한 침해사고의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관합동조사단에게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침해사고 원인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은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의3.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2. 제48조의4제6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 및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또는 기피한 자

[표 1] 침해사고 관련자료 미제출자등에 대한 제재 수단

현행	개정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협조를 다시 명령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 3의 범위(매출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행기한이 지난 날부터 1일당 200만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개정안에 따라 침해사고 관련자료 미제출자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이행강제금으로 변경할 경우 현 시점에서는 제재조치 변경에 따른 위반행위의 증감, 위반행위자의 1일 평균매출액 등을 예측할 수 없으며,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징수·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시행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수입의 증가 및 과태료 수입의 감소 등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침해사고 관련자료 미제출자등에 대하여 최근 5년(2020년 ~ 2025년 7월 현재)간 과태료 부과 건수는 0건임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최동완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최동완	02-6788-3746	dongwaniii@nabo.go.kr